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66 발의연월일: 2025. 3. 19.

발 의 자:고동진·박덕흠·서일준

배준영 · 송석준 · 강대식

주호영 · 김소희 · 박준태

박정훈 • 박충권 • 김예지

성일종 • 한지아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풋살장에서 무게추 등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골대가 넘어져 어린아이들의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풋살장 등의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 균열 등 지역적 및 형식적인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설비·장치의 설치에 대한 규정'은 부재하여, 각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입법적 불비'가 존재하고 있음.

이에 국민들이 체육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방 자치단체 및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소관하는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설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조의9 신설 등).

법률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9(체육시설의 안전 시설·설비·장치의 설치) 국가·지방자치 단체 및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체육시 설의 안전 시설·설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법률 제20499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0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4조의9에 따라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설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업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조의9(체육시설의 안전 시설			
	·설비·장치의 설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체육시설업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			
	·설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			
	<u>다.</u>			
법률 제20499호 체육시설의 설치	법률 제20499호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를 물	륟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40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2. 제4조의9에 따라 체육시설			
	의 안전 시설・설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업			
	<u>자</u>			
<u>2.</u> ~ <u>7.</u> (생 략)	<u>3.</u> ~ <u>8.</u> (현행 제2호부터 제7			
	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